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지 제36호의10서식] <개정 2023. 6. 28.>

인증번호 : 제　　호

#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

| | | |
|---|---|---|
| 상 호 (사업장명칭) | | |
| 성 명 (대표자) | | |
| 주 소 | | (전화번호:　　) |
| 장치의 명칭 | | |
| 장치의 종류 | | |
| 장치의 형식 | | |
| 인증 사항 | 사용연료의 종류 | |
| | 장착대상 자동차의 범위 | |
| | 그 밖의 사용조건 | |
| | 특기사항 | |
| | 인증 조건 | 1. 인증사항에 명시된 장착 대상 자동차의 범위 및 사용조건에서 사용해야 합니다.<br>2. 「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」 별표 6의4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|

「대기환경보전법」 제6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 성능인증서를 교부합니다.

년　　월　　일

국립환경과학원장　직인

210㎜×297㎜[백상지(120g/㎡)]